

「별표 1」

*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는 뒷면참조

주식취득(또는 소유)의 신고서						신고유형 ⁽¹⁾		
						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신고 <input type="checkbox"/> 간이신고		
(2) 신고인	회사명 (또는성명)			대표자 성명	(한글) (한자)	설립일		
	주소				연락처	전화:		
	재무상황 ⁽³⁾ (단위:백만원)	납입자본금			자본총계			
		자산총액 (기업집단전체)	()		매출액 (기업집단전체)	()		
주요사업								
상 대 회 사	회사명			대표자 성명	(한글) (한자)	설립일		
	주소				연락처	전화:		
	재무상황 ⁽³⁾ (단위:백만원)	납입자본금			자본총계			
		자산총액			매출액			
주요사업								
주 식 취 득 내 용	주 주		주식 소유비율 (%)		총취득금액	취득일 ⁽⁶⁾		
			취득 전	취득 후				
	신고인 관련	당해신고인						
		특수 관계인	계열회사 ⁽⁴⁾					
			회사외의자 ⁽⁵⁾					
계								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(기업결합의 신고)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(기업결합의 신고등)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								
20 신고회사 ⁽⁷⁾ 대표자 (인)								
공정거래위원회 귀중								

※ 기업결합신고관련 문의처 :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기업결합과(전화:02-507-1934~5)
 ※ 기업결합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68조(벌칙)에 의거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기재요령

- (1) 신고유형 : 해당란에 v표시
- (2) 신고인 :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신고인별로 별지에 기재. 신고인이 회사외의 자인 경우에는 해당란만 명기
- (3) 재무상황 : 영제12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. (기업집단전체)란에는 당해신고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전체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을 기재
- (4) 계열회사 : 영제3조(기업집단의 범위)의 기준에 의해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함
- (5) 회사외의 자 : 개인, 비영리법인, 단체를 말함
- (6) 취득일 : 영 제18조제5항제1호 각목의 기준에 따라 기재
- (7) 신고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리인 및 그 대표자를 각각 기재

첨부서류

: 간이신고대상인 경우에는 면제

가. 상대회사의 주주현황

구 분		성명또는명칭	소유주식수	주식소유비율(%)	
				취득전	취득후
신고인관련	당해신고인				
	특수 관계인	계열회사			
		회사외의자			
	계				
기 타					
	계				
합 계					

주)계열회사, 회사외의 자, 법인, 개인등이 다수인 경우 1%이상 소유자를 각각 기재

나. 신고회사의 주주현황 : 상기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양식에 의거 작성

다. 계열회사 현황 : 신고인과 상대회사별로 아래양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

회사명	설립일	상장일	주요업종	납입자본금	자본총계	자산총액	매출액	단기순이익	주요주주(%)
합 계									

주1)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를 포함하여 기재

주2) 직전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작성

주3) 납입자본금등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

주4) 금융·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하고,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기재

라. 주식취득관련 입증자료(주식매매계약서 및 대금영수증등) 1부

마. 주식취득사유서 1부

바. 신고인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각각 1부

사. 주요품목의 수급등 시장상황 : 별첨양식에 의거 작성·첨부